

**2022년 한국농수산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3. 5.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

I. 감사 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제21조(실지감사)의 규정

□ 감사목적

-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교육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업무 효율성 및 미래 농어업경영인 육성 시스템 내실화에 기여

□ 감사대상

- 한국농수산대학교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19~'22.10월 현재)의 기관운영 및 교육·행정,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간) 2022. 11. 09. ~ 11. 25.
- (인원) 감사담당관 외 7명

II. 감사 결과

1	실습계획서 작성 부실 등 장기현장실습 운영 미흡		
처분요구	기관주의, 통보(6)	관계기관	교무처

-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 및 총장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현장실습 협정서를 체결하고 실습계획서에 따라 실습하여야 하나,
 - 실습계획서의 주요 학습 및 실습 예정사항을 개략적으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여 실습생과 현장교수와의 교육 관련 갈등 발생 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실습계획서를 협정서의 첨부자료로 포함하지 않아 계획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 실습생의 알권리 보장 및 학습 중심 실습 기반 마련 필요
- 실습장 선정 시 평가항목을 계량화·구체화하고 현장실사 시 졸업생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실습여건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나,
 - 평가표의 배점 항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현장교수의 적절성’을 50% 배정하고, 경영규모별 차등 배정 등 착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현장실사 시 졸업생 등 외부위원 참여 없이 지도교수만으로 심사하는 등 열악한 환경의 실습장이 선정될 우려가 있음
- 실습생을 실습장에 배정할 경우 선택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로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 실습생의 거주지 소재 시·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습장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어 협정서 이외의 시간에 추가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동일 실습장에 배정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규정하지 않아 많은 실습장에 실습생 1명을 배정(44.6%)하여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배치가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 실습 중 실습생에게 발생된 손해가 보상되도록 학생실습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 학생실습종합보험이 아닌 농협중앙회의 '농업인 안전보험 1형'을 가입하여 상해사망 등 보장금액이 적고 배상책임이 보상되지 않는 등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범위가 축소되는 결과 초래
- 실습 관련 이외의 업무 지시 금지 등 실습생의 인권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현장교수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 현장교수 대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368명 중 26명 이수, 7.1%) 실습생의 만족도 조사에서 현장교수가 실습 관련 이외의 업무를 지시한다는 불만 표출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따라 실습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실습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 실습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 실습장은 57.0%에 그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실습장(55.5%)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22.6%로 저조한 실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추진하면서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실습장 선정

기준이 주관적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생을 2인 1조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손해보상보험의 보장내역이 미흡하고 실습생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장기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한국농수산대학교

① 장기현장실습 교육을 위한 실습계획을 작성할 경우 ‘장기현장실습 착안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협정서에 첨부하는 등 실습생의 알권리 보장 및 학습 중심 실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②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장을 선정할 경우 평가 항목을 계량화·구체화 하고 현장방문 실사 시 졸업생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안전하고 양호한 실습장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③ 실습생을 배정할 경우 선택의 자유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 소재 시·군 지역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위험한 작업을 2인 1조로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실습생 배정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④ 실습 중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상보험을 가입할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입 여부, 보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 수준 및 운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⑤ 실습 관련 이외의 업무 지시 금지 등 실습생의 인권보호와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현장교수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⑥ 실습 중 실습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습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미가입 실습장에는 실습생을 배정하지 않는 등 효율적인 안전사고 방지 방안 마련 요구 (통보)

2	욕설·비하 발언 등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처분요구	징계, 경고	관계기관	교무처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나,
 - ○○전공 A 교수는 전공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습생의 의지와 다르게 부당한 실습조건을 수용하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언행, 욕설 및 비하 발언을 하였음
 - * 실습생과 현장교수간 실습기간 협의 사항, 실습 이후 협정서 작성하게 된 경위, 비하 발언이 있었던 실습장의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추가 조사 필요
- 「장기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현장교수와 실습생은 실습시간, 수당, 휴가 등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전공 B 교수는 협정서의 실습시간이 주 5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도 실습생에게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습하도록 종용하였고, 실습생 만족도 조사에서 협정서의 실습시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알면서도 실습현장에서 협정서에 따라 실습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음

한국농수산대학교

① 전공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습생의 의지와 다르게 부

당한 실습조건을 수용하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언행, 욕설 및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실습생과 현장교수간 실습기간 협의 사항, 실습 이후 협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비하 발언이 있었던 실습장의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 후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축산학부 ○○전공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조치 요구 (징계)

② 협정서의 실습시간이 주 5일 40시간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실습생에게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실습하도록 종용하였고, 실습 현장에서 협정서에 따라 실습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축산학부 ○○전공 B 교수에 대하여 “경고” 조치 요구 (경고)

3	전임교원 겸직신고 소홀		
처분요구	기관주의, 통보	관계기관	교무처

- 「한국농수산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임교원은 비영리단체 임직원, 학회 회장, 부회장 등 임원 등의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 C 교수 등 전임교원 14명은 학회의 부회장, 이사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복무를 부실하게 처리

농림축산식품부

학회 등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회장, 부회장 등 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는 등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대하여 “기관주의” 조치 요구 (기관주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전임교원 등 소속공무원 중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학회의 회장, 부회장 등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파악하고 겸직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조치 요구 (통보)

4	외부강의 관리·감독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운영지원과

-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 감사원 감사(2020년)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주의 요구 처분이 있었고, 자체 점검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규정 위반의 행위(20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조치는 하지 않고 효력이 없는 경미한 조치(구두주의)만 처분

한국농수산대학교

외부강의 등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외부강의 등의 미신고·허위신고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밝혀낼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 요구 (개선)

5	직원 병가 사용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운영지원과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공무원은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사용 시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 진단서 첨부 대상 병가를 신청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거나(10명), 소견서·진료비 영수증 등 진단서가 아닌 부적정한 증빙서류 제출(3명)

한국농수산대학교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 이후 추가 병가신청 시에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교육 실시 요구 (통보)

6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부서주의	관계기관	운영지원과

- ‘관서운영경비 선지급 및 선결제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선지급(결제) 할 경우 대상업체·사용기간·금액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이용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 증빙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나,
 - 실제 업체를 이용한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의 증빙서류를 보완하지 아니(14건)하였으며, 특히 건당 50만 원 이상(4건)의 경우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음

한국농수산대학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 집행하고 실제 업체를 이용한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의 증빙서류를 보완하도록 운영·관리하지 않는 등 업무추

진비 집행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운영지원과에 대하여 “부서주의” 조치
요구 (부서주의)

7	공무국외출장규정 관리 및 심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개선	관계기관	교무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자체 국외출장 규정을 제정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출장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야 하나,
- 자체 국외출장 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없이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하여 학생 단체 해외연수에 대해 심사(19년 이후 39건)하면서 인솔자만 심사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음

한국농수산대학교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참고하고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 수립 요구 (통보)

② 재학생 등의 단체 해외연수 추진 시 사전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개선 요구 (개선)

8	의무영농 이행률 산출 방법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교학과

-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졸업한 날의 3개월 이내부터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어업 등에 종사한 졸업생의 의무영농 이행률을 산출하여야 하나,

- 졸업생의 의무영농 이행률을 산출하면서 의무영농 미이행자인 학비상환 인원은 제외하고 사망 등 면제 및 유예자 인원만 반영함에 따라 실제 의무영농 이행률(95.8%)보다 높게 산출(99.9%)되는 결과 초래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의 의무영농 이행률을 산출할 경우 의무영농 대상 인원 중 의무영농을 이행하지 아니한 학비상환 인원을 차감하는 등 객관적인 의무영농 이행률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개선)

9	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기획조정과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 기관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27개)하면서 교육개발센터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위촉 없이 내부직원만으로만 구성하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미흡

한국농수산대학교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10	기후변화교육센터 활용 미흡		
처분요구	권고	관계기관	교무처

-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설치 기본계획에 따라 실습시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지역·국가에 기여하여야 하나,
- 규정상 외부기관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내부 교직원 위주로 시설을 활용하여 사용률이 저조(64.3%)하고, 외부기관 활용에 필요한 사용료 부과기준도 정하지 않고 있음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후변화교육센터를 교직원 연구, 학생 교육 및 공공단체, 민간기관, 업체 등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외부기관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습시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요구 (권고)

11	유해인자 취급 실습·실험실 종사자 건강검진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교무처

-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유해인자 취급 실습·실험실 종사자의 특수 건강검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검진 안내·독려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나,
- 실습·실험실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 응답자에 한하여 건강검진 대상으로 확정하고, 미검진자에 대한 검진 실시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는 등 특수 건강검진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

* '19~'21년 중 특수건강검진 대상 실험실, 대상자가 매년 개연성 없이 변동, 해당 기간 검진대상 15명 중 5명 미검진

한국농수산대학교

각 실습·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약품, 연구활동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정하고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 요구 (통보)

12	기숙사 운영 관리 및 학생증 발급 규정 미흡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교학과

-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등에 따라 입사 학생의 준수사항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학생자치부에 의존함에 따라 입사 학생에 대한 생활 및 출입 관리가 미흡하므로 기숙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학생자치부 활용은 축소 필요
- 「제 규정 관리 규정」에 따라 학칙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서관 이용, 학생회 선거, 기숙사 출입, 식당 이용 등에 활용되는 학생증에 대하여 학생증의 규격, 발급 및 재발급, 반납, 휴대 의무 등을 명시한 학생증 발급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등 학생증 관리 소홀

한국농수산대학교

- ① 전자학생증 등을 통해 입사자의 일탈행위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통보)
- ② 학생증의 규격, 발급 및 재발급, 반납, 휴대 의무 등을 명시한 학생증 발급 규정을 제정하는 등 학생증 관리 철저 방안 마련 요구 (개선)

13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 미비 및 서약서 작성 미흡		
처분요구	통보(2)	관계기관	교무처

- 교육공무원(조교수, 조교 등)과 비전임교원(석좌교수, 실습교관 등)의 승진, 채용 등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용함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제척사항과 서약서 제출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하나,
 -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는 교육공무원 인사규정과 다르게 심사위원 제척사항과 서약서 제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 교육공무원은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등에 관한 규정」, 비전임교원은 「한국농수산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심사위원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경우 비밀유지 등 보완사항, 지원자와의 이해관계 등 규정에서 정한 제척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기술하도록 하여야 하나,
 - 교육공무원 및 비전임교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심사위원 서약서에 제척사항을 기술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사항의 일부만 기술(개인적 친분 누락 등)하는 등 서약서를 미흡하게 작성

한국농수산대학교

① 「한국농수산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심사위원의 서약서 제출과 제척사항을 규정하도록 조치 요구 (통보)

② 심사위원 서약서 제출 시 제척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작성하도록 관련 규정에 서약서 서식을 포함하는 방안 강구 조치 요구 (통보)

14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산학협력단

-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학력·출신지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아니한 응시원서를 통해 채용하여야 하나,
 - 산학협력단은 채용공고 과정에서 학교명, 출신지, 어학점수 등을 작성하도록 한 응시원서를 사용하고, 이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활용

한국농수산대학교

채용 과정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해 응시 원서를 개선하고, 채용 계획 수립에서 모집·선발에 걸쳐 체계적 절차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매뉴얼 등 개선방안 마련 요구 (개선)

15	산학협력단 연구재료 구매 절차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산학협력단

-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중앙구매한 물품은 검사·검수를 실시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 산학협력단은 적정한 거래 가격 시장조사 없이 연구책임자가 구매요청 시 제출한 견적서 업체와 견적서상의 금액으로 구매계약 진행
- 총장 위임 없이 산학협력단 내부결재를 통해 검수 기준을 완화(300만 원 이상 현장검수 → 사진 검수)하여 별도 운영하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에 가지 않고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검사·검수 조서에 사인만 하여 검수 진행

한국농수산대학교

연구재료 구매 시 적정한 거래 가격 시장조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연구재료 검수 시 스탬프로 개별 연구재료에 표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요구 (통보)